

[일련번호 : 20]

양 천 구

주 의 요 구

제 목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업무처리 부적정

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◻◻동

내 용

1. 업무개요

◻◻동은 「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」, 「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침」 등에 따라 청통합문화이용권 발급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.

2.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

「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」 제2조(문화이용권의 발급 신청) 및 제3조(문화이용권의 발급), 「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침」(문화체육관광부)에 따르면, 문화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[별지 제1호 서식]의 문화이용권 신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고,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검토하여 문화이용권의 발급 대상에 해당하면 문화이용권을 발급하여야 하며, 「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침」(문화체육관광부)에 따르면, 만 19세 이상은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,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[별지 제3호 서식]의 문화이용권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고, 세대원들의 지원금을 세대원 1장의 카드에 합산하는 경우, 합산 신청서에 합산되는 세대원의 서명을 모두 받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.

3.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

◆◆동은 2022년~2024년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업무처리 과정에서 ‘위임장 또는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’ 등을 제출받는 것을 누락한 사실이 있다.

[표]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업무 부적정 내역

연번	신청인	신청일	신청내용	지적사항
1		2022.2.3.	본인 및 자(2011년생)의 문화이용권 발급	미성년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미동의
2		2022.5.11.	*** (2014년생) *** (2012년생) *** (2010년생) 문화이용권 발급	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신청원칙임에도 미성년자 본인의 신청서 징구 및 신청인 서명 등 일체 공란
3		2022.7.12.	배우자 문화이용권 발급	위임장 없음
4		2022.10.17.	자의 문화이용권 재발급	위임장 공란 (자의 도장만 날인)
5		2023.2.2. 2023.2.6.	본인의 문화이용권 발급	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미동의
6		2023.6.8.	요양보호사가 대상자 문화이용권 발급	위임장 없음
7		2024.12.3.	모와 조모의 문화이용권 발급	위임장 모의 위임 없음

4.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

◆◆동은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.

5. 조치할 사항

◆◆동장은

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기 바라며,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·감독하시기 바랍니다. (주의)